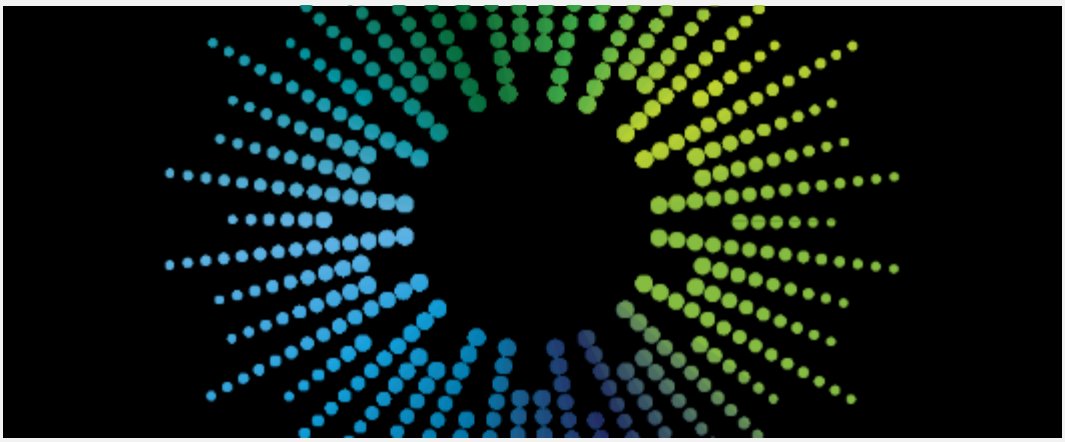

#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 Korean Tax Newsletter

2020 년 7 월

## • 예규·판례

### 가.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 42 조의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중 제 2 항 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05.26)

▣ 예규 전문

【질의】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갑법인)로부터 물적분할된 ◇◇지주(을법인)의 자회사이며 을법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 을법인과 체결한 '관리협약서' 및 을법인의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따라 그룹사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갑법인, 을법인 및 그 자회사(이하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 등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열사에 청구하여 쟁점인건비를 지급받고 이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음.
- 이후 자문대상법인은 그룹 내 계열사간 인력파견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함.

**(질의요지)**

-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인력파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및 지주회사의'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부가가치세법」제 4 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평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 2 조 제 1 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 다 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자신이 근로자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지, 파견사업주에게 인력파견용역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과세관청에서는 직원파견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고용사업주에게 인력소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와 유사하다고

보고, 인력소개 대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이므로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의 위 해석은 결론에 있어서는 수긍할 수 있지만, 회신이유에 대하여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DB 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6, 2020.06.10.)

▣ 예규 전문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보험업법」제 87 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으로 질의법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이하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수수료를 지급받고, 질의법인은 해당 설계사에게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영업 및 기업광고의 일환으로 방송사에 채널사용 대가를 지급하여 방송을 통해 보험 상담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방송사로부터 상담 받은 고객의 정보를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한 고객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하 “고객 DB”)하여 설계사에게 보험상품 판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 고객 DB 는 방송사로부터 구매한 가격의 95% 정도의 가격으로 설계사에게 제공하고 고객 DB 를 이용할지 여부는 설계사가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1 건당 1 명의 설계사만 이용가능하고, 질의법인은 설계사들이 이용한 건수에 따라 설계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

**(질의요지)**

-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구입한 고객의 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해당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해당 고객정보의 제공이 보험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

-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기업 홍보 등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고객의 정보를 구매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하 “고객 DB”)한 후 자신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DB 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해당 고객 DB 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 11 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평석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0 조 제 1 항)
-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 14 조).
- 과세관청에서는 보험업대리점이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DB 를 제공하는 것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부수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다.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분의 100 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2020.06.11)

▣ 예규 전문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으로서 법원으로부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 인가 결정을 받은 후 2011 년부터 현재까지 상환계획*을 이행 중에 있으며 2017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음

  * 2011 년⊠2020 년까지 상환계획, 2012.2.00.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음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제 10 조에서 규정하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100%)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245 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 283 조제 1 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 10 조제 1 항 1 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평석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례로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이때,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하며,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100%를 한도로 공제합니다(법인세법 제 13 조 제 1 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45 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법인에 포함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 '회생계획의 이행'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계획을 이행 중인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예규입니다.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